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초·중등 수업 자료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초등학교 학생인권조례 이해 수업 자료

- 십자말풀이 학습지 2
- 활용가이드 3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 이해 수업 자료

- (1단계) 권리주장과 학생인권조례 연결 학습지 8
- (2단계) 인권 관점의 사례 바라보기 학습지 9
- (3단계) 인권 관점의 문제해결 실천 학습지 10
- 활용가이드 12

참고자료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구성표 14
- 인권교육 자료 참고사이트 15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16

- 총괄 김인욱(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과장)
- 기획 이창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사무관)
최지혜(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옹호관)
- 집필 남태훈(웅정초등학교 교사)
이한섭(덕장중학교 교사)
- 검토 김선경(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우창(덕성초등학교 교장)
- 발행일 2020년 10월
-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 디자인 PPC디자인(031-247-2227)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십자말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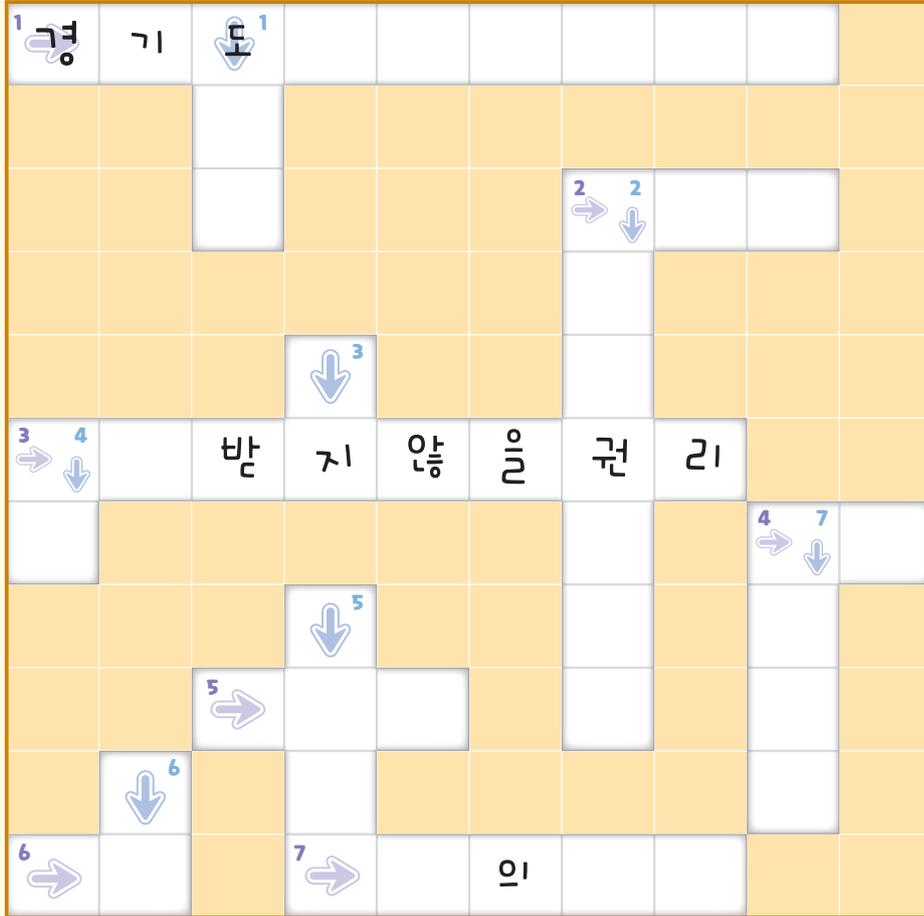
학년 반 이름

▶ 함께 풀어보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보기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어요.)



→ 가로열쇠

- ① 경기도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2020년은 이 법이 공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 ②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을 지켜줘야 해요.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 학생 등)
- ③ 제5조 □□받지 않을 권리 모든 학생은 성별, 성적, 종교, 나이, 용모 등을 이유로 □□ 받아서는 안돼요.
- ④ 제11조 □□을 실현할 권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특성이예요. 누구나 웃이나 머리 모양 등으로 □□을 표현할 수 있어요.
- ⑤ 제12조 □□□□의 자유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뜻해요. 학생들은 누구나 부당한 간섭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 ⑥ 제10조 □□을 취할 권리 학생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히 쉬어야 해요.
- ⑦ 제16조 의사 □□□□의 □□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 세로열쇠

- ①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교는 청결한 화장실, 여러 권의 좋은 책을 가진 □□□, 쾌적한 냉난방 등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해요.
- ② 제26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생의 편에서 보호하는 옹호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 ③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에서 체벌은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 ④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 언어, 문화, 용모 등의 □□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 ⑤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자치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과 같이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 ⑥ 제23조 □□에 대한 권리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가 담긴 □□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 ⑦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등을 말해요. 학생의 □□□□를 보호하는 것도 학생인권을 지키는 길이에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십자말풀이 활용 가이드

이 교육 자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어휘력을 고려하여 이 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과 연계하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넣었습니다. 수업의 주안점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질문을 선택하여 활용하면 좋습니다.
- 시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을 선택하여 수업분량을 조절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수업이 권장되는 상황을 고려한 자료입니다. 수업자료(십자말풀이)만 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학년수준과 사전 교수·학습계획에 따라 학생인권에 대한 심화된 활동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15쪽. 인권교육 자료 참고사이트 참고)

학습목표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 ㉡ 학생인권을 스스로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수업준비 자료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십자말풀이 학습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인쇄물
(※ 14쪽.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구성표 참고/ 조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마음열기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영상 시청하기(2분5초)

웹주소: <https://youtu.be/UISBOP7hUhk>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 탑재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영상)

- ㉡ 학습목표 확인하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 학생인권을 스스로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생각에 날개 달기

- ① 십자말풀이 퀴즈에 나타나지 않은 학생인권 찾기(※ 14쪽.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구성표 참고)
- ② 생활 속 필요한 학생인권 항목 만들기

- 학생인권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이 지켜져야 할까요?
- 퀴즈 속 학생인권 외에 또 어떤 학생인권이 있을까요?
- 여러분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보충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른 친구 생각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발표해 주세요.

- ③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내용 확인하기

-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지 않아요.
- 이해하지 않는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새롭게 알게 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조항은 무엇인가요?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조항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 ❖ 위 활동을 적절히 오가며 활동합니다.
- ❖ 학생인권조례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 ❖ 조례의 내용과 함께 그 조항이 만들어진 의미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 ❖ 학생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권리 오용, 타인 권리 무시)이 나타날 경우, 학급에서의 토의, 토론을 통하여 바로 잡습니다.



삶에 접속하기

- ④ 학생인권과 자신의 삶 연결하기

-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인권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학급에서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수업활동과 학습내용을 정리합니다.
- ❖ 학생인권을 위하여 각자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실천을 다짐하도록 안내합니다.
- ❖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제3조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 교육감, 경영자,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제4조 (책무)
- ❖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16쪽.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참고)



십자말뚝이 관련 학생인권 주요 사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체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규범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및 인권기구 등의 체계(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 등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교공동체의 책무

-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학생인권 주요 사례 및 판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을 앞 번호로, 여학생을 뒤의 번호로 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여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 가나다 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문화’, ‘차이나’,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직접 빗대는 혐오표현을 한 경우
 -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도 혐오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됩니다.”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포함)
 -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의 경우와 같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금하고 있는 지도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히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경우
 - 학생들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기호에 따라 외투를 입고 벗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에 이에 대해 학교 내 편안한 복장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집니다. 안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밟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괄 수집한 경우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학생이 학교 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교사가 임의적으로 제거한 경우
 - 학교는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대자보 게시의 절차·방법·장소 등에 대해 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게시 글의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퀴즈 및 심화 활동

학년 반 이름

[1단계 : 연결하기] 학생 권리 주장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권리 주장 내용을 읽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학생의 인권)에서 몇 조에 해당하는지 맞춰보세요

제2장 학생의 인권

* 각 조항의 세부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www.law.go.kr)를 참고하세요.

- | | | |
|----------------------|---------------------------|-------------------------|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7조)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
|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제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
|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제12조) 사생활의 자유 |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 (제16조) 의사 표현의 자유 |
| (제17조) 자기활동의 권리 | (제18조)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제19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 (제20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제22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 (제23조) 급식에 대한 권리 | (제24조) 건강에 관한 권리 | (제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제26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제27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

번호	권리 주장 내용	관련 조항
1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2	너무 일찍 등교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3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4	두발을 기르고 자르는 것은 내 자유예요.	
5	금연지도를 이유로 화장실 문을 갑자기 열지 말아주세요.	
6	친구들 앞에서 바보 취급하며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7	교실 안이 찝뽕처럼 답습니다. 냉방을 해주세요.	
8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9	인권침해를 교육청에 구제신청 한 것에 대해 학교 안에서 비밀유지하고 보호해주세요.	
10	친구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을 놀리고 괴롭히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11	교실에서 내 가방 속을 검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12	학교에서 내리는 환경조사서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것은 쓰고 싶지 않아요.	
13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압수하지 말고 방과 후엔 돌려주세요.	
14	수업 장면을 촬영해서 나를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15	교복에 명찰을 떼고 붙이게 해 주세요. 명찰을 고정해서 학교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이 싫어요.	
16	교칙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교문지도 등으로 일괄 단속하지 말아주세요.	
17	내가 동의하지 않은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주세요.	
18	방과 후 행사의 학생 참여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도록 사전에 신청 받아주세요.	
19	특성화고 학생인데요, 현장실습 전·후라도 들어야 할 수업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20	수업 시간에 조사를 이유로 불러내지 말아주세요.	
21	신체적 고통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22	성적이나 징계 받은 사실만으로 학생대표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23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자라고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24	한부모 가정에게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25	성별 차별이 아니라 성별 차이를 이해해주세요.	
26	너무 많은 과제를 내지 말아주세요.	
27	학생에게 기도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28	학생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흡연측정기 등의 검사를 강제로 하지 말아주세요.	
29	각서 작성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30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합법적 집회에 참여했다고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31	너무 춥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퍼나 외투를 입도록 해주세요.	
32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3	장애를 이유로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34	학생운동선수 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2단계 : 바라보기] 인권침해 사례 찾아보기

1. 다음에 제시된 인권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사례를 찾아보세요.

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지만 복장이나 머리에 신경을 쓰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학생들을 단속을 하였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짧거나 복장이 특이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지시에 순종적이지 않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단속을 하는 것 같다.

나) 나는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세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지만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다.

다) 나는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축구부가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축구부를 열심히 지원해주었지만 축구 시합에서 지는 경우에는 체벌을 가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축구 시합에서 지는 것은 아니다.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체벌하는 것 같다.

라) 나는 장애인이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었다. 회사에서는 나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 해주었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를 바랐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마련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 침해 사례) 나는

.....

.....

.....

.....

(문제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

.....

.....

.....

[3단계 : 실천하기] 인권으로 만드는 세상



학습목표

-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다.



생각자료

[생각쌓기 1] 피자를 나누는 방법

피자를 가지고 다투는 아이들이 있었다. 서로 더 큰 피자를 먹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했더니 먼저 선택권을 가진 아이가 더 큰 피자를 먹게 되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불만이 생겼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역할을 나누어 피자를 자르는 사람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랬더니 피자를 자르는 역할을 맡은 학생은 최대한 공평하게 피자를 자르기 위해 노력했고, 피자를 자르지 못한 학생은 먼저 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더니 누구나 불만 없이 공평하게 피자를 나눠가질 수 있었다.

※ 참고 영상 : EBS 다큐프라임<공감, 인간관계의 뿌리> <https://youtu.be/bNObFXJh8sQ>

[생각쌓기 2] 피자 가게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

피자가게에서 피자가게 주인과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피자가 잘 팔리게 되어 피자가게 주인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자 주문이 많아져서 더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자가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피자가게의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피자가게 주인은 피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뽑았다.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자가게에 취직할 수 있었다.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자가게가 돈을 많이 벌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피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랬더니 피자가게는 더 많은 피자를 만들어 팔 수 있었고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자가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 누구도 불만이 없게 되었다.

[생각쌓기 3] 피자가게와 마을의 갈등

피자가게 주변 사람들이 피자가게 주인과 싸우고 있었다. 피자를 많이 생산할수록 피자가게 주인과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주인들은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피자가게 주변 가게는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자가게에서 얻은 돈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는 일 등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랬더니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혹시 피자가게가 잘못되어 일자리를 잃어도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몸이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피자가게 주변 사람들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가게를 만들고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생각쌓기 4] 피자마을과 이웃 마을의 갈등

피자가게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피자가게 마을이 잘 될수록 피자가게 마을 사람들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피자가게 마을 주변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를 주변 마을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사용되었다. 트럭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자가게 마을에서 물건을 만들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 지키도록 하고 주변 마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많은 벌금을 내게 하고 피자가게 마을 주변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천방안 마련하기

① 문제 상황

.....

.....

.....

.....

② 해결을 위한 약속

.....

.....

.....

.....

③ 기대되는 효과

.....

.....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퀴즈 및 심화 활동 활용가이드

1단계 : 연결하기

학생 권리 주장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이 자료는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경기도교육청, 2013)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인권침해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의 도입 단계에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의 권리 주장 내용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습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번호	관련조항
1	제5조	6	제6조	11	제12조	16	제12조	21	제6조	26	제10조	31	제24조
2	제10조	7	제21조	12	제13조	17	제9조	22	제5,17조	27	제15조	32	제17,19조
3	제10조	8	제25조	13	제12조	18	제9조	23	제5조	28	제25조	33	제5,8,27조
4	제11조	9	제26조	14	제12,13조	19	제8조	24	제5,13조	29	제15조	34	제6,27조
5	제12조	10	제6조	15	제13조	20	제8, 25조	25	제5조	30	제16조		

2단계 : 바라보기

인권침해 사례 찾아보기

바라보기 단계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사례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을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사례를 제시하여 못하는 경우 다음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촉진합니다.

“ 사례 ”

수업 중 편 짓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러가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 그리고 저에게 A4 용지에 가득 차게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셨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대. 교무실에서 혼이 난 후 제 편에는 진정으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도 드렸는데 반성문까지 쓰라니 이해가 안돼. 솔직히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 위 사례는 학생주장으로 가정된 상황입니다. 6-7쪽의 사례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 하고 ‘문제점’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 실천하기 **인권으로 만드는 세상**

피자 나누는 방법

사회의 기본적인 갈등은 자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 속에서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을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서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스스로를 폭력적인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약속입니다.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용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폭력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피자가게 주인과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권은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이 피자 가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다른 여유를 가지게 되고 집단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자가게와 마을의 갈등

공동체가 단허있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주변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 공동체 모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게 열려 있고 함께 포용하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성을 이해할 때 인권은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피자마을과 이웃 마을의 갈등

피자마을은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문제 등은 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에서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모든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도록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약속],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쌓기 내용에서 제시된 형식이며 학생들이 이런 형식에 맞춰 문제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할 경우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세계적 이슈를 신문기사, 뉴스 등을 통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예, 나이키운동화와 아동노동, 기후위기와 그레타 툰베리, 물건의 소비와 쓰레기 처리 등)
- 또는 본 활동에 앞서 주어진 네 개의 글 중 일부의 '해결을 위한 약속', '기대되는 효과' 부분을 가리고 이 부분을 채우게 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른 뒤 본 활동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구성표

		십자말뚝이에서 확인한 조항	십자말뚝이에서 다루지 않은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제4조(책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7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제29조(홍보)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2절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제32조(보호자 교육)
			제33조(인권실태조사)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제3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제38조(시민활동 지원)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40조(검직금지)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42조(사무기구 등)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제5장 보칙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제45조(조사)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7조(시행규칙)		

인권교육 자료 참고사이트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자료실(학생인권참여 메뉴) <https://edup.goe.go.kr/shr/shrMain/main.do>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 10. 5. 공포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인권교육 자료 및 타 기관 자료 탑재
- ▶ 자료실의 공지사항 통해 인권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탑재 자료 목록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 ▶ 세계인권선언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인권배움터 메뉴), 인권영화 DVD 신청 및 학습지도안(인권지식터 메뉴) 등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NHRCKr/>

- ▶ 웹드라마, 학생인권 관련 결정례 영상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https://library.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 ▶ 인권(교육)관련 각종 자료집 · 단행본 · 보고서(정책정보 메뉴), 결정례 게시판(메인페이지 하단) 등

📁 경기교육연수원 <https://www.gtie.go.kr/>

- ▶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학점 인정 원격 직무연수)
- *위 연수과정 및 교재 공개 페이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열린 강좌) : [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ld=1339186\(학점 미인정\) / 학교별 교직원 연수 활용 가능](http://www.kocw.net/home/cview.do?mty=p&kemld=1339186(학점 미인정) / 학교별 교직원 연수 활용 가능)

📁 교육사랑연수원 <http://www.edulove.co.kr/>

- ▶ 선생님을 위한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인권위원회 위탁, 학점 인정 원격 직무연수)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s://www.unicef.or.kr/news/crc-publications.asp>

-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소책자 등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s://amnesty.or.kr/involved/education/>

- ▶ 기후변화, 빈곤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활동안 자료

📁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홈페이지 자료실, 블로그)

📁 지식채널e 인권관련 영상 <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

- ▶ 다시보기 메뉴> 검색창에서 '내용별 → 인권' 선택 후 검색

※ 위 사이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교육상황별 적절성은 학교에서 판단절차를 거칠 것을 권함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란?

설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의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2011년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입니다.

직무내용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공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 지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시선에서 인권보호와 구제를 고민하지만, 학생인권을 매개로 연결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 절차 흐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경기학생인권' 검색)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